

전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77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77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129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피고, 항소인D

변론 종결2020. 1. 7.

판결 선고2020. 2. 14.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129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대위소송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원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D의 채무승인에 의해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거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D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6. 5. 23.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1996.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은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전혀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는 가압류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을 하거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등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부당하게 우대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채권의 시효중단 또는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D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F에게 최근까지 수차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2007. 3. 20.경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F에 대한 채무변제의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한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D이 2018. 7.경 피고에게 작성해 준 거래사실 및 채무확인서의 '피고에게 거듭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까지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D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김자림

판사황윤정

별지